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4. 2. 16(금) 10:00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7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## 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공 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규정 정비(안 제1조)
- 나. 금나래아트홀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 징수를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료특례 및 입장권 발행 조항 삭제(현행 제6조 삭제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7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10조제1항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금나래아트홀의 운영에 있어 사용료 및 입장권 발행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천구 문화시설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목적 규정 정비(안 제1조)
- 2) 금나래아트홀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 징수를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료특례 및 입장권 발행 조항 삭제(현행 제6조 삭제)
- 3)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7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10조제1항)

### 다. 검토의견

#### ○ 국민권익위원회 「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」 제도개선안

-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 징수 금지
  - 사용료는 국·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기준 준수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해 책정
    - ▶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 편차 최소화로 사용료 징수 투명성 확보 및 역차별 논란 차단
- 수익배분 관점에서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특례 규정을 폐지해 부당수익 및 유착비리 요인 제거
  - 대관 사용료를 관람물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규정, 대관 기간별로 사용료를 할증 적용하는 규정 등 폐지

○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및 입장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시설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>

1. (생략)

2. (생략)

3. (생략)

4. (생략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시·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·도자연유산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 [시행일: 2024. 5. 17.]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7. 국제교류 및 협력

가. 국제기구·행사·대회의 유치·지원

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